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 추가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9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 추가	3
※ 참고자료	9
1.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9
2.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10

I. 제안경위

2025년 2월 17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그러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보전지역 인근 거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하천유역에 인접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홍수 예방 목적의 하천공사가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되어 기지정된 보호지역의 하천 관리 및 하천 주변지역의 보호지역 신규 지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하천법」 제27조부터 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홍수예방을 위해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보

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의
예외 조항으로 추가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 추가

개정안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 제한사항의 예외로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와 ②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10.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

현행	개정안
③ ~ ⑤ (생략)	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와 건축물등의 신축·증축, 하천·호소 등의 구조 변경 등을 금지하되²⁾,

1)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행위 제한의 예외로 함께 규정하고 있음³⁾.

한편,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하며⁴⁾, 생태·자연경관보전지역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울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내에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행위 제한의 예외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⁵⁾⁶⁾.

[최근 5년간 생태·자연경관보전지역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사례]

지역명	일시	유해야생동물 및 피해현황	피해규모	
			인적 피해	물적 피해
왕피천 유역	'22.7월	민가 멧돼지 습격 (전이구역)	-	장독 등 살림살이 파손, 반려견 2마리 상해
섬진강 수달 서식지	'24.4월	민가 멧돼지 습격 (생태·경관 보전지역 인근)	2명 부상	-

※ 출처: 환경부

또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보수 및 복원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하며, ‘유지·보수’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뜻하는데⁷⁾,

5) 참고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3조의3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이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현행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해당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허가를 받은 경우 포획이 가능함.

7)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생태·자연경관보전지역 내 하천유역에서도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행위 제한의 예외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와 유지·보수사업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⁹⁾.

[최근 5년간 생태·경관보호지역 내 홍수피해 사례]

보호지역명	일시	홍수피해 지점 및 현황	피해규모
동강유역	매년	강원 평창군 미탄면 미하리 일원	도로 (L=1.28km, B=4~5m)
섬진강 수달서식지	'20.8.8	전남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일원	데크시설물 (L=150m, B=2.2m)

※ 출처: 환경부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보수 및 복원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 8)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이하 이 조에서 “하천공사등”이라 한다)를 하천공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하천공사 외의 공사
 2.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이하 생략)
-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9) 다만, 현행법 체제하에서도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하천공사가 가능함.

이에 개정안은 생태·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와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유해야생동물과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신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 및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통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행위제한의 예외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643호,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24.12월 기준)

지역명	위 치	면적(km ²)	특 징	지정일자 (변경일자)
환경부 지정 : 9개소, 249.196km²				
지리산	전남 구례군 산동면 심원계곡 및 토지면 피아골 일원	20.20	극상원시림 (구상나무 등)	1989.12.29
섬진강 수달서식지	전남 구례군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일원	1.834	수달 서식지	2001.12.01
고산봉 붉은박쥐서식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일원	8.78	붉은박쥐 서식지	2002.05.01
동강유역	강원 영월군 영월읍, 평창군 미탄면 정선군 정선·신동읍 일원	80.426 (완: 3.713 전: 0.359)	지형·경관 우수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	2002.08.09 (‘24.03.08확대)
왕피천 유역	경북 울진군 서면, 근남면 일원	102.841 (완: 55.643 전: 1.849)	지형·경관 우수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	2005.10.14 (‘13.07.17확대)
소항사구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항리, 독산리 일원	0.121	해안사구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	2005.10.28
하시동·안인 사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일원	0.234	사구의 지형·경관 우수	2008.12.17
운문산	경북 청도군 운문면 일원	26.395	경관 우수 및 수달, 하늘다람 쥐, 담비, 산작약 등 멸종위기 종 서식	2010.09.09
거금도 적대봉	전남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일원	8.365 (완: 3.189)	멸종위기종과 특정야생동식물 서식	2011.01.07

(완) 완충구역, (전) 전이구역, 이외 면적은 핵심구역

시도	지역명	위 치	면적 (km ²)	특 징	지정일자 (변경일자)
시·도지사 지정 : 24개소, 38.187km²					
서울	한강 밤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및 마포구 당인동 314	0.279	도심 속 철새도래지	1999.08.10
	둔촌동	서울 강동구 둔촌동 212	0.030 (완: 0.005)	생물다양성 풍부 오리나무림 발달	2000.03.06 (‘13.07.04확대)
	방이동	서울 송파구 방이동 439-2 일대	0.059	생물다양성 풍부	2002.04.15 (‘05.11.24확대)
	탄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및 강남구 수서동	1.151	도심 속의 자연하천	2002.04.15
	진관동	서울 은평구 진관동 282-1 일대	0.017	생물다양성 풍부	2002.12.30
	암사동	서울 강동구 암사동 616 일대	0.270 (완: 0.143)	한강변 자연호안	2002.12.30 (‘21.12.30확대)
	고덕동	서울 강동구 고덕동 396 일대 서울 강동구 강일동 661 일대 (고덕수변 생태복원지 ~ 하남시계)	0.320 (완: 0.082)	한강변 자연호안으로 다양한 자생종 번성 및 조류 서식	2004.10.20 (‘07.12.27확대)
	청계산 원터골	서울 서초구 원지동 산4-38번지 일대	0.146	갈참나무를 중심으로 낙엽활엽 수림대 발달	2004.10.20
	현인릉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3-1 일대	0.057	오리나무림 발달	2005.11.24
	남산	서울 중구 예장동 산5-6 일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산1-5 일대	0.705	남북녹지축의 거점 공간 신갈 나무 등 자연성 유지	2006.07.27 (2007.12.27)

시도	지역명	위 치	면적 (km ²)	특 징	지정일자 (변경일자)
	불암산 삼육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223-1 일대	0.204	생물다양성 풍부 서어나무군집 분포	2006.07.27
	창덕궁 후원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일대	0.441	도심지역 자연성 유지 갈참나무군집 분포	2006.07.27
	봉산	서울 은평구 신사동 산93-16	0.073	대규모 팔배나무 군집	2007.12.27
	인왕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일대	0.258	기암과 소나무가 잘 어우러지 는 수려한 자연경관	2007.12.27
	성내천 하류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6 일대	0.070	도심 속 자연하천	2009.11.26
	관악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	0.748	회양목군락 자생지	2009.11.26
	백사실 계곡	서울 종로구 부암동 산7 일대	0.132 (완. 0.037)	생물다양성 풍부 (자연생태 및 경관 우수)	2009.11.26
	한강 강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 168-2 일대	0.283 (완. 0.045)	도심 속 자연하천 생물다양성 풍부	2024.12.26
울산	태화강	울산 북구 명촌동 태화강 하류 일원	0.983 (완. 0.697, 잔. 0.107)	철새 등 야생동·식물 서식지	2008.12.24
강원	소한 계곡	강원 삼척시 근덕면 초당리, 하맹방리 일원	0.104 (완. 0.021, 잔. 0.022)	국내 유일 민물곰 서식지	2012.10.05
전남	광양 백운산	전남 광양군 옥룡면, 진상면, 다압면	9.74	자연경관 수려 및 원시자연림	1993.04.26
경기	조종천 상류 명지산· 청계산	경기 가평군, 포천군	22.06	희귀곤충상 및 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	1993.09.01
부산	석은덤 계곡	부산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산101-1	0.02	희귀야생식물 집단서식	2015.06.10
	장산 습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산51-188	0.037	산지습지로써 희귀야생식물 서 식	2017.08.09

※ 출처: 환경부